

##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- 552호

『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 
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 
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8월 17일

### 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##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하늘문화센터의 운동시설 중 체육관의 사용료 등을 인하하여  
체육관 사용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 
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하늘문화센터의 운동시설 중 체육관 사용료를 현재 사용료  
대비 30퍼센트 인하함(안 별표 1)
- 나. 하늘문화센터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체육관의 전기료와  
대강당, 체육관, 강의실 등의 냉·난방비를 삭제함(안 별표 2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8. 29(월)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3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|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조항 | 찬반여부<br>및 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○ 주 소 :<br>○ 성 명 :<br>○ 연락처 : |      |              |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# 4. 붙임자료

가. 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 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헌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6. 8. 18 .

발 의 자 : 김정헌 의원

(찬성자 : 인)

## 1. 제안이유

하늘문화센터의 운동시설 중 체육관의 사용료 등을 인하하여 체육관 사용에 따른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하늘문화센터의 운동시설 중 체육관 사용료를 현재 사용료 대비 30퍼센트 인하함(안 별표 1)
- 나. 하늘문화센터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체육관의 전기료와 대강당, 체육관, 강의실 등의 냉·난방비를 삭제함(안 별표 2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운동시설의 체육관 대관료란 중 “평일:40,000”을 “평일:28,000”으로 “주말,공휴일:60,000”을 “주말,공휴일:42,000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전기료의 체육관란을 삭제한다.

별표 2 중 냉·난방란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관련법령</p>         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36조(사용료)</li> <li>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p> |
| <p>관련법규<br/>정비대상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해당 없음”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관련자료</p>        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해당 없음”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

- 하늘문화센터의 운동시설 중 체육관의 사용료 인하 및 부대 시설 중 체육관 전기료와 대강당, 체육관, 강의실의 냉·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른 세입 감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

- 체육관 사용료 인하 등에 따른 세입의 순감소액이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※ 체육관 사용료 및 전기료와 부대시설 냉·난방비(2016년)

(단위 : 천원)

| 계      | 체육관 사용료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관 전기료             | 냉·난방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| 평일                    | 주말, 공휴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대강당                 | 체육관             | 강의실등 |
| 43,826 | 10,054천원×2<br>=20,108 | 5,406천원×2<br>=10,812 | 1,773천원×2<br>=3,546 | 4,240천원<br>×2=8,480 | 440천원×2<br>=880 | 0    |

주) 2016년 상반기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금액을 추정하여 산정

※ 세외수입 감소액(연간)

(단위 : 천원)

| 계      | 체육관 사용료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체육관 전기료 | 냉·난방비 |     |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       | 평일                     | 주말, 공휴일                |         | 대강당   | 체육관 | 강의실등 |
| 22,182 | 20,108천원×0.3<br>=6,032 | 10,812천원×0.3<br>=3,244 | 3,546   | 8,480 | 880 | 0    |

주) 체육관 사용료 인하 등에 따른 사용자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

## 4. 작성자

-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현 의원